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3에 의거하여 독산테니스장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 및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역량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

2. 추진근거

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

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1조

다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
3. 주요내용

가. 대상시설

1) 시설현황

기 관 명	소 재 지	개 관 일	대 표 자	규 모	주요시설
독산테니스장	독산로54길 288	2010. 9. 1.	우 성 만	5,080㎡	코트 6면, 사무살2동 등

2) 위탁현황

가) 수탁기관 : 금천구테니스협회

나) 위탁기간 : 2022. 9. 1. ~ 2025. 8. 31.

다) 위탁유형 : 자립형

라) 위탁료(공원사용료) : 연 13,687,000원

3) 위탁내용

가) 독산테니스장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

나) 지역 주민들을 위한 테니스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나. 주요위탁 내용

1) 위탁기간 : 3년(2025. 9. 1. ~ 2028. 8. 31.)

2) 위탁내용 : 독산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전반

3) 선정방법 :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

4) 위탁료(공원사용료) : 연 16,082,000원(최저금액)

4. 재위탁 사유

가.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: 「적정」

1)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고, 예산 편성 부담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낮다고 판단

2) 다각적인 검토 결과, 독산테니스장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 적격 심사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
3) 세부 항목별 내용 별첨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

관계법령

『지방자치법』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『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』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『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』

제10조(행정재산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관리수탁자)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,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,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4에 따른다.
- ⑤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『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4조의2(민간위탁사무의 내용)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4. 문화·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
8.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
4. 민간위탁 기간

5. 수탁자 선정방식

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

『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』

제14조(위탁관리)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·관리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에 따른 금천구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 장애인체육회에 문

화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『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』

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,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·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

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.

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

□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(행정재산 관리위탁)
- 「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- 「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4조(위탁관리)

□ 시설현황

- 시 설 명 : 독산테니스장
- 소 재 지 : 금천구 독산로54길 288
- 규 모 : 5,080 m^2
- 시설내용 : 코트 6면, 사무실 2동, 화장실
- 관리부서 : 운영관리(문화체육과) / 시설관리(공원녹지과)

□ 위탁현황

- 위탁기간 : 2022. 9. 1. ~ 2025. 8. 31.(3년)
- 수탁체 : 금천구테니스협회(회장 : 우성만)
- 주요업무 : 독산테니스장 전반적인 운영·관리
- 위탁료(공원사용료) : 금41,061천원(연 13,687천원)

□ 적정성 검토 결과 : 「적정」

- 총 평
 -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고, 예산 편성 부담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낮음

-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및 시설운영 경험 등 다각적인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, 독산테니스장은 민간위탁 방식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

○ 검토기준 : 2개 분야, 7개 항목

- (공공성)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- (효율성) ③ 경제적 효율성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⑤ 성과측정의 용이성 ⑥ 관리운영의 투명성
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

○ 세부 항목별 검토

검 토 기 준		검 토 결 과
공 공 성	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· 테니스장 운영은 전문성과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요구되어, 인력 확보 및 전문성 측면에서 제약이 적은 민간 위탁 운영이 적합
	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	· 위탁계약을 통해 요금 기준, 운영 시간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어,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
효 율 성	③ 경제적 효율성	· 민간위탁 시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 운용에 부담이 없으며,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 효과 기대
	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· 테니스장 운영 관련 경력, 자격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경험과 노하우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
	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· 「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(지도·감독)에 따라,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, 위탁 계약에 따라 정기·수시 검사를 통해 성과 측정 가능
	⑥ 관리운영의 투명성	· 위탁계약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며, 보고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일정 수준 투명성 확보 가능
	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	· 지역 내 유사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우수한 위탁기관 선정을 기대할 수 있음